

협약서

대전관광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과 플랜트치과(이하 “치과”라 한다)는 “공사” 소속 직원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【협약 범위】 본 협약은 “공사”와 “치과”가 합의하여 “공사” 소속 직원의 진료 및 서비스 혜택에 관한 제반 내용과 협력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 2조 【협약 내용】 ① “치과”는 “공사”의 직원 및 가족이 “치과”的 진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심양면으로 우선적인 편의를 제공한다.

② “공사”는 직원에게 협약 내용과 “치과”的 진료 및 서비스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지한다.

제 3조 【협약 대상】 본 협약의 대상은 “공사” 소속의 직원 및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되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시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적용할 수 있다.

제 4조 【신의성실 및 상호협력】 ① “공사”와 “치과”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진료 및 서비스와 관련한 필요 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때에는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② “공사”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구강건강 지원과 비보험 진료 내용에 대해 “치과”的 협력기관 진료비 기준에 따라 최대한 협조한다.

제 5조 【협약 기간】 본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, 협약만료일 30일전에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,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 6조 【기관 로고 사용】 ① “공사”와 “치과”는 서로 협력기관을 상징하는 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.

② “공사”와 “치과”는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로고를 사용하여야 하며, 의료법 및 표시광고법 등 제반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를 위반한 기관에게 책임이 있다.

제 7조 【해석 준용】 이 협약의 해석상의 문이 있고,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8조 【협약 해지】 ① “공사”와 “치과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치과”가 협약 취지와 내용을 위반하여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2.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

② 전항의 경우 “공사”와 “치과”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 9조 【협약의 효력】 본 협약은 “공사”와 “치과”的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3월 27일

“공사” 대전관광공사
사장 윤성국 (인장)

“치과” 플랜트치과

대표원장 손외수 (인장)
PLANTDENT